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인가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촉법나이트’를 통한 복수?

2023년 7월 18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일로 교권의 위기와 학부모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교사 집단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집했다. 교실의 붕괴를 걱정한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은 해 9월 대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년 경력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문제의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고소 내용은 ‘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교사가 학생에게 ‘뽀뽀’를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한쪽에 몰아세운 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냈다’ 등이었는데, 학부모가 문제 삼은 교사 행동이 정상적인 생활지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는 더욱 더 무고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 학부모를 규탄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해당 교사는 당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어 더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생전에 대전교사노조에 보낸 교권상담신청서를 보면 “1학기 내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해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해 무기력을 느끼게 했다. 결국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됐다. (중략)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지만 묵살되었고 결국 우울증이 생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변화는 느렸고 미미했으며, 심지어 없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2023년 7월 18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그 전말마져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유아무야될 것을 걱정했다.

이때 ‘촉법나이트’라는 SNS가 영웅처럼 등장했다. 그는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의 신상,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물론, 자녀 사진까지도 공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냈다. 촉법나이트는 우리가 가려왔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긁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공적 시스템은 우리의 감정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뜻의 방향이 권력자들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촉법나이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선명했고 빨랐다. 드디어 가해 학부모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촉법나이트가 알려준 가해 학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항의성 포스트잇을 무수하게 붙이고 계란을 투척하는 방식으로 가해 학부모를 응징하였다. 가게는 너털너털해졌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글이 올라왔다. 결국 그들은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촉법나이트가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을 간 사실을 공개하자, 전학 간 지역에서는 이들의 전학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었다.

‘디지털교도소’의 명과 암

사인에 의한 공개 행위는 ‘촉법나이트’ 이전에도 있었다. 바로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가 그것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였던 인터넷 사이트이고,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1) 김미성 (2023. 9. 9).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대전교사 생전교권침해 기록공개.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465> (2023. 11. 25). 최종검색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아주 나쁜’ 놈들의 신상정보를 ‘확실하게’ 공개한다는 점이었다. 먼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2020년 대한민국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N번방은 주로 어린 여성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하여 나체 등 굴욕적인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들 사진과 신상을 ‘텔레그램(Telegram)’ 등에서 유포한 사건이었다. N번방 사건 직전에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에 대해 18개월 징역형만 선고되고 미국 송환도 불허되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N번방에 대해서도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까봐 걱정하였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남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짧게 감방에 다녀오면 된다는 사실을 부당하게 여겼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걱정과 욕망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는 자신들의 운영목적에 대하여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인의 신상정보는 사진,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평생 인터넷에 박제될 터였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사실검증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이를 위한 운영진의 의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는 등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게시가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채정호 카톨릭대 의대교수도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었다. 2020년 6월 26일 그의 신상과 전화 번호,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됐다. 채교수의 휴대폰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쏟아졌다. 채교수는 2020년 7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통하여 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교도소가 아니라 정말 교도소에 사는 것 같았다”며 “내 가족과 지인은 물론 내 직장 동료, 내가 속한 학회와 내가 속하지 않은 학회에도 알려졌다. SNS의 전파력이 정말 무서웠다. 내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목사님도 걱정을 하셨고 아는 신자분들도 계셨다. 내가 치료를 했던 환자들로부터 ‘교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정말 살기 싫다’는 문자도 받았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했다.²⁾

디지털교도소 게시로 인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7월 대학생 A가 지인능욕(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행위)을

2) 박태인 (2020. 9.8). [단독] 디지털교도소 캡처는 가짜였다...억울한 교수의 반격.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6941> (2023. 11. 25). 최종검색

했다며 그의 얼굴 사진과 학교, 전공, 학번,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A는 지인능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무죄를 입증하기도 전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 9월 끝내 자살했다. 디지털교도소가 벌주는 방식은 명징하고 즉각적이었지만, 검증이 부족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건이 논의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거부, 정지 또는 제한)를 명할 수 있다. 불법 정보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된다.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 등 전형적인 불법사이트와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성과 불법성이 공존하였기 때문에 심의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제67차 정기회의(2020. 9. 14.)에서는 전체사이트 접속차단은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70차 임시회의(2020. 9. 24.)에서는 최소규제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하고, 디지털교도소가 교도의 목적을 하고 있지 못하며, 공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체접속 차단이 결정되었다.³⁾ 또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⁴⁾

적법과 위법의 경계, '배드파더스'

이른바 사적 제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이 된 쪽은 '배드파더스'였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개설되었다. 양육비 이행판결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직장, 주소 등을 공개하였는데, 사이트 공개 전에 먼저 미지급자에게 연락을 하여 양육비 지급을 할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운영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였고, 이로 인한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의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배드파더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고, 미지급 부모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곧바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도 690건에 달했다고 한다.

3) 송채은·윤석민 (2021).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8권 1호, p.116 및 p.125.

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범행 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박공간 개설 방조 범죄가 있어, 형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어 4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결국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차단을 요청하고 형사고소도 하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배드파더스에 대해서 공익성을 인정하고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적시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①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이고, ② 운영진이 대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해왔고, ③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비하, 모욕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④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데다가, 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적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배드파더스는 허용되는 사적 제재로서, 일반 사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다음은 2심 판결문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신상정보공개의 허용 여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숙고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중요성 내지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인 또는 사적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제도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특정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얼굴 사진 등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다.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기관의 경우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그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에도 얼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현행제도에 대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조화롭게 절충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된 것임이 고

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접근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광역성,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들을 반복, 계속해서 올리는 공간을 개설하는 문제

결국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등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 권한을 개인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로 바라보아야 한다. 배드파더스에 대해 ‘미투운동’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투운동’ 역시 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1차적 효과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것처럼 배드파더스 역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성시켜 양육비 미지급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두 개는 1차적으로 명예가 훼손될지언정 공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비슷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가 미투운동과 완전히 구별되는 점은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를 수집, 망라하는 ‘장(場)’을 만들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스스로 ‘히어로’가 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히어로’는 ‘법’보다 화려하고 신속하며 통쾌하다. 심지어 법은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권력자에 붙어 정의롭지 않은 판단을 하는 도구로 이용될 때도 있다. 이럴 때 헤성처럼 등장하는 히어로에 대중들은 환호한다. 훌륭한 인성과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언제나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준다면야 법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히어로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히어로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학습해왔다. 법 없이 사적 복수로서 응징하던 고대 시대를 지나, 신이 절대 진리였던

5) (사)오픈넷 (2023). <‘배드파더스’ 심의에 대한 의견서> 4면. URL: <https://bully.kr/BTMNarV> (2023. 11. 27). 최종검색

중세시대를 거치고, 짐이 곧 국가이던 왕권시대를 마지막으로 건너오면서, 현재의 체계, 이른바 사회적 계약인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공정성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론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당연히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개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표현도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또한 헌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러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며 표현의 자유가 향유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정보이지만,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이에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이고, 공인의 공익성 있는 보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 또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보도를 하여야지 단정보도를 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국가기관은 성범죄자,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정해진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미지급자의 초상을 제외한 이름, 도로명까지의 주소를 공개한다. 그런데 선의와 공익성을 갖춘 개인이면 그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간단히 뛰어넘어 이를 배제시킬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개인은 언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물론 정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선정적인 표현과 같은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좀 더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허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순전히 타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보다 개인에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개인이 인터넷 권력을 가질 때는 기존 언론의 파급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강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응징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 아동을 학대한 자 등이 차례로 인터넷에 정리되어 유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행 수위의 악행에 대한 이상한 서열 가르기로 변질될 여지마저 있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부족한 검증으로 올라온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점, 사적 제재를 통해 지목된 자(어떨 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까지)를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복수가 사회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트너스

가 내린 처방은 통과하였고, 운영진의 의도는 비교적 선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 부분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독배임이 분명하다. 